



R & B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를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의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06	1. 구성
--------------	----	-------

II.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18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0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24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5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27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30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32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4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Ⅳ.

상임위원회	48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2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5	3)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안
	58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61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3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64	1)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

Ⅴ.

본회의	68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69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3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6	별첨 1.용어해설
		2.국회일정표



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1. 구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16 현원 16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힘 7 비례대표 0



위원장
이 채 익

선 거 구 울산 남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19대,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 정

경기 파주시을
재선(20대, 21대)



위원
김승원

경기 수원시갑
초선(21대)



위원
김의겸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유정주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이병훈

광주 동구남구을
초선(21대)



위원
이상헌

울산 북구
초선(20대, 21대)



위원
임오경

경기 광명시갑
초선(21대)



위원
전용기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정청래

서울 마포구을
3선(17대, 19대, 21대)

국민의힘



간사
김승수

대구 북구를
초선(21대)



위원
김예지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배현진

서울 송파구를
초선(21대)



위원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를
4선(18대, 19대, 20대, 21대)



위원
이 용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초선(21대)

소관기관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국악중학교		대한체육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국립중앙박물관		태권도진흥재단	
	국립국어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문화원연합회	
	해외문화홍보원		국립합창단	
	국립국악원		국립오페라단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발레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한글박물관		국립극단	
	국립중앙극장		서울예술단	
	국립현대미술관		뉴스통신진흥회	
	한국정책방송원		(주)연합뉴스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언론중재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재청 소속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정보원		(재)정동극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세종학당재단		한국전문문화대학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문화진흥(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예술의 전당		현충사관리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칠백의총관리소	
	(재)국악방송		국립무형유산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만인의총관리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능유적본부(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재청 공공기관	한국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국외소재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체육진흥공단

발의

수업원회

상업진흥원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소관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국어기본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복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이스포츠허브(전자스포츠허브)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관한법률	
	미디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부문		소관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경륜·경정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전통무예진흥법
		포물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관한 특별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씨름 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사행산업
	문화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환경부와 공동 소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민입법청구법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9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특수수사청법안
		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약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보위원회			발의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916호



이용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3.2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3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910호



이용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3.2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인적분할의 경우와 달리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음.

이에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5).

4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931호



이용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3.23.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65조의6).

5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962호



조명희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3.2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7

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000호



강민정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3.2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최근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졌음.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현장실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그간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아닌, 교사와 노무사를 통해 이뤄져 왔음. 그리고 현장실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실사는 학교의 교사가 담당해왔음. 현재 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현장실습 안전을 책임지며,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이해를 쌓아나갈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등).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999호



임 오 경

선 거 구 경기 광명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3.29.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10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012호



강 은 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3.30. 제안

제안이유

최근 CCTV, 컴퓨터·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등 다양한 감시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근무태도나 업무성과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장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감시설비는 시설 보호, 노동자 안전, 영업비밀 보호 등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상 필요를 명분으로 도입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위치나 이동 경로, 이메일이나 SNS 활용 내역, 개인적 취향이나 성향, 노동조합 활동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이러한 감시설비의 운용 방식이나 운용 범위 등이 노동자들에게 적절하게 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감시설비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동의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감시설비의 설치·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및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감시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근로자의 작업 과정·상황, 행동, 성향 및 특징을 포함한 개인정보 등을 관찰, 수집, 기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감시설비”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 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감시설비의 설치 및 감시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 다. 감시설비의 설치·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만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 9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 라. 근로자에게 감시설비의 대체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음을 규정

대한민국헌정50주년기념사업회
헌법
수업원회
상임운영위원회
국회헌법회의

함(안 제97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마. 감시설비의 설치·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재판, 징계절차 또는 인사 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97조의3 신설).

11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157호



전용기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4.0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이후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등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좌우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알리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를 두어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12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113호



이 형 석

선 거 구 광주 북구를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4.06.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때문에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 분양방식인 선·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 입주체는 국토부령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과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후분양제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 1조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9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 방식을 의무화해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4조제9항 신설). 더불어 국공유지 우선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켜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3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4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5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7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8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97호



조 승 래

선 거 구 대전 유성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2.08.	제안
		상정
상 임 위 원 회	2022.03.30.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소 위 원 회	2022.04.14.	상정

제안이유

최근 미·중 간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기술블록화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제외하면 패권경쟁의 중심이 되는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체계가 개별 이슈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발전과 국가안보·외교·기술주권 확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토대로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 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경제발 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설치하고,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인력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전략 기술 특화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허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자율성이 강화 된 국가전략기술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참고자료**

<주요 기술수준 평가 결과 (KISTEP('20)/IITP('19) 등)>

이차전지	(日)100 > (韓)96.0 > (美) 82.5	5G·6G	(中)96.7 > (EU)95.3 > (韓)92.1
반도체·디스플레이	(美)97.5 > (日)93.4 > (韓)91.3	인공지능	(中)91.8 > (日)88.2 > (韓)87.4
수소	(美)95.0 = (EU)95.0 > (韓)75.0	합성생물	(日)81.1 > (中)72.7 > (韓)71.1
양자	(中)93.2 > (日)90.4 > (韓) 62.5	우주	(日)82.7 > (中)80.8 > (韓)57.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동 제정안의 국가전략기술과 타 법률상 전략핵심기술 개념 간 비교>

구분	국가전략기술 (동 제정안)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핵심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개념	경제·안보·미래혁신 관점에서 국가적 확보·육성이 필요한 기술	국가·경제안보 영향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	산업 가치사슬 內 투자·생산을 위해 핵심기능을 하는 기술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아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기술
목적	국가생존·안보 관점의 기술주도권 확보	국가·경제안보 및 경제발전 첨단전략기술 확보	소부장 경쟁력 강화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
기준	△국가안보 △신산업 △공급망·통상 전략적 중요성	△공급망 영향 △성장잠재력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산업안보 △산업 파급효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
범위	기술 소 분야 (AI, 양자, 우주 등)	공급망 산업기술 (백신, 반도체, 배터리)	주요산업 제조기술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

미래·첨단·전략·기술·연구·개발·촉진·법률안

발의

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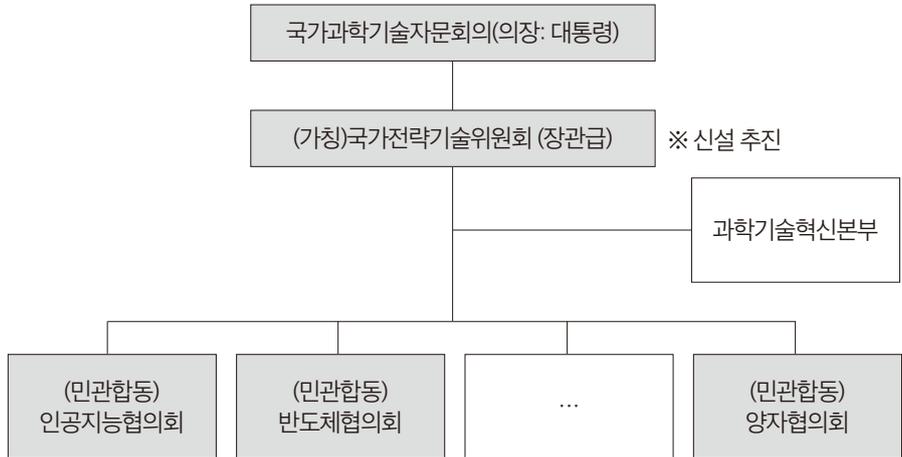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내용	기술육성 및 보호 (R&D·세제지원·특허표준·국제협력 + 기술보호)	기술보호 (수출통제, 보호구역 설정 등)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국가전략기술위원회 및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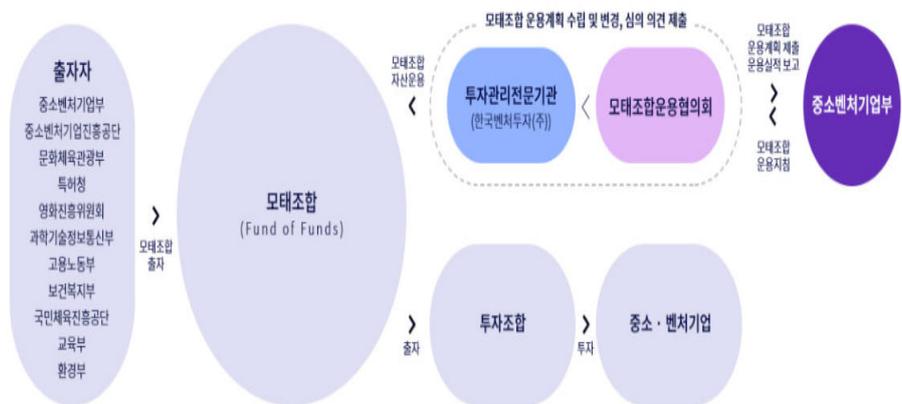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국가전략기술 추가 선정 절차 예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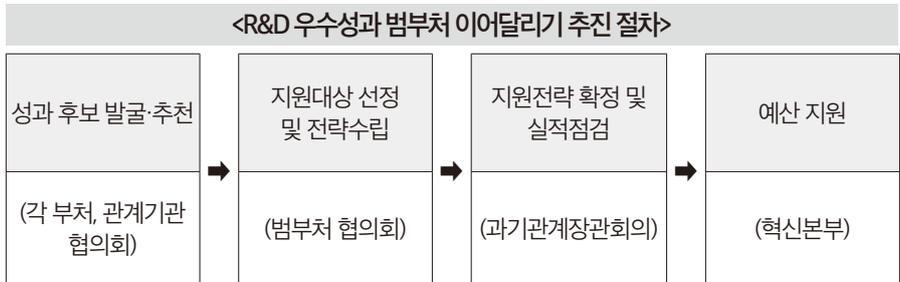
<벤처투자모태조합 개요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벤처투자모태조합 주 출자분야〉	
계정	투자내용
중진계정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등에 투자하는 펀드
청년계정	청년창업기업 투자펀드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기업·혁신성장기업·농수산벤처기업 투자펀드
소재부품장비계정	소재부품장비분야 투자 펀드
엔젤계정	엔젤매칭투자조합 등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지방계정	지방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문화계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관광계정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스포츠계정	스포츠산업진흥법 상 스포츠산업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영화계정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
특허계정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의 이전알선과 사업화 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과기계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한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기통신역무제공 및 서비스 등 방송통신사업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보건계정	보건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환경계정	미래환경산업, 미세먼지관련 기업 투자 펀드
해양계정	해양신산업 관련 기업 투자펀드
도시재생계정	구도심 도시재생을 목표로 관련 기업 투자펀드
국토교통혁신계정	국토교통혁신산업 기업 투자 펀드
교육계정	대학창업, 학생창업 기업 투자펀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2020.10.12.

미래·청년·지역·인재·유망·기업·구조

발의

수용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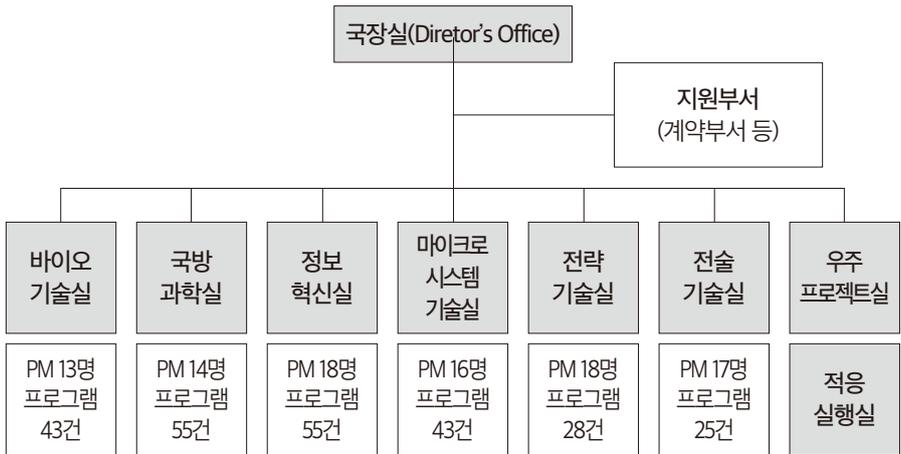
상임위원회

거의회의

〈성과별 맞춤형 후속지원 유형〉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①후속R&D ②실증, 인증, 시범적용	③BM 설계, 마케팅 전문가 지원 ④수요-공급 매칭, 공공수요 연계 등	⑤기술금융 (기술평가, 투·융자) ⑥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2020.10.12.

〈참고 : 美 DARPA 조직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참고 : DARPA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PM의 권한〉

단계	세부 내용
기획	프로그램 기획 권한, 과제 공고문 작성 총괄
평가	평가위원 구성 가능, 평가의견과 무관하게 연구자 추천 가능
관리	과제 지속 수행 여부(Go/No-go) 판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참고자료 - 주요국 기술육성 국가전략>

 **공급망 점검과 함께 10대 핵심기술 육성에 박차, 기술동맹 강화**

- (Endless Frontier Act) 10대 핵심기술 R&D에 5년간 1,500억\$ 투자, DARPA 예산 2배 확대 등 기술우위 확보 전략 본격화
- (전략적 경쟁법) 국무부 내 기술협력국을 설치해 핵심기술 R&D·표준을 조율하는 등 우방국과의 첨단기술 협력 강조

<p>10대 핵심기술 <Endless Frontier Act></p>	<p>①인공지능/머신러닝/자율주행, ②고성능컴퓨터/반도체, ③양자정보과학, ④로봇/첨단제조, ⑤자연재해·인재방지, ⑥첨단통신/실감기술, ⑦생물공학/합성생물학, ⑧데이터관리/사이버보안, ⑨첨단에너지, ⑩첨단소재과학</p>
--	--

 **14차 5개년 規劃(규획), 과학기술 자립자강이 1순위 전략**

- (14.5 규획)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R&D 투자 年 7% 이상 확대, 도전적 R&D 강화 등 국가역량 및 자원 집중

<p>7대 과학기술 8대 산업 <14.5 규획></p>	<p>[과학기술] ①인공지능, ②양자, ③집적회로, ④뇌과학, ⑤유전자·바이오, ⑥임상의학/헬스케어, ⑦우주·심해·극지탐사 [산업] ①신소재, ②대형운송수단, ③스마트제조/로봇, ④항공엔진, ⑤미래자동차, ⑥첨단의료기기/신약, ⑦북두위성항법시스템, ⑧농업기계장비</p>
--	--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 6대 전략기술 육성 및 對美공조 강화**

- (新산업전략) 전략분야 핵심품목 대외의존도 완화 추진
- (對美공조) EU-美 합동 무역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조 강화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 해소를 위한 공조, 사이버안보 등 글로벌 기술이슈 대응/협력

<p>6대 전략분야</p>	<p>①원재료, ②배터리, ③의약품원료, ④수소, ⑤반도체, ⑥클라우드/엣지</p>
----------------	--

 **對美 파트너십 강화, 10대 핵심기술 육성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 (경제안보) 10대 핵심기술 지원, 내각 내 경제안보상 신설 및 경제안전보장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경제안보 대응력 강화

<p>10대 핵심기술</p>	<p>①인공지능, ②바이오, ③재료, ④Beyond 5G, ⑤슈퍼컴퓨터, ⑥양자, ⑦반도체, ⑧우주시스템, ⑨에너지·환경, ⑩건강의료</p>
-----------------	--

미래창조경제혁신사업추진위원회 연구실

일반의

수요위원회

상업위원회

국회과학기술위원회

<참고자료 - 주요국 기술육성 국가전략>								
	기술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자료원	
		수준 (%)						
		격차 (년)						
1	인공지능	87.4	91.8	88.2	91.8	100	IITP ('19)	인공지능
		1.5	1.0	1.4	1.0	0		
2	5G·6G	92.1	96.7	92.1	95.3	100	IITP ('19)	이동통신
		0.9	0.4	1	0.6	0		네트워크
3	첨단 바이오	76	77.2	80	92.4	100	KISTEP ('20)	유전체정보 이용 질환원인규명
								유전자치료
								맞춤형 신약개발
		3.5	3.2	2.4	1.1	0		지능형 약물전달 최적화
						시스템/합성생물학		
4	반도체· 디스플레이	91.3	81.8	93.4	90.5	97.5	KISTEP ('20)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장비소재
								초고속·초절전 반도체 소자 및 SoC 설계·제작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1.1	2.4	0.9	1.4	0.4		대면적·초고속·초정밀 디스플레이 소재·공정·장비
5	이차전지	96.0	82.5	100	75.0	82.5	KISTEP ('20)	대용량·장수명 이차전지
		0.5	2	0	3	2		
6	수소	75.0	70.0	100	95.0	95.0	KISTEP ('20)	수소·연료전지
		3.0	5.0	0	1.0	1.0		
7	첨단로봇· 제조	76.6	76.6	88.9	97.7	97.7	KISTEP ('20)	적용형 서비스로봇
								재난구조/ 극한탐사 로봇
								스마트 제조로봇
							제조 기 반	스마트팩토리
		3.1	2.8	1.4	0.5	0.4		고효율·초정밀 생산시스템
								3D 프린팅 장비·소재
						3D 프린팅 SW·활용		
8	양자	62.5	90.0	85.0	96.5	100	KISTEP ('20)	양자정보통신
		4.5	2.0	1.8	0.5	0		

9	우주	64.3	81.7	80.3	90.9	100	KISTEP (20)	우주발사체 개발·운용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우주탐사·활용
		10.3	5.5	5.0	2.5	0		유,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기술
								유,무인 자율 비행체 통합 관제 시스템 기술
10	사이버 보안	85.6	90.3	86.4	93.4	100	IITP (19)	차세대 보안
		1.5	1.0	1.4	0.8	0		블록체인

<미국 DARPA 현황 및 특성>

■ 개요

○ (역할) 국가안보와 관련된 파괴적 혁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국방 R&D 전문기관(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수행)

* 설립 배경 :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57년)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 과학기술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계기로 '58년 설립

- 아이디어가 자원 접근성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인재·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신속히 실현하기 위한 가교(Bridge)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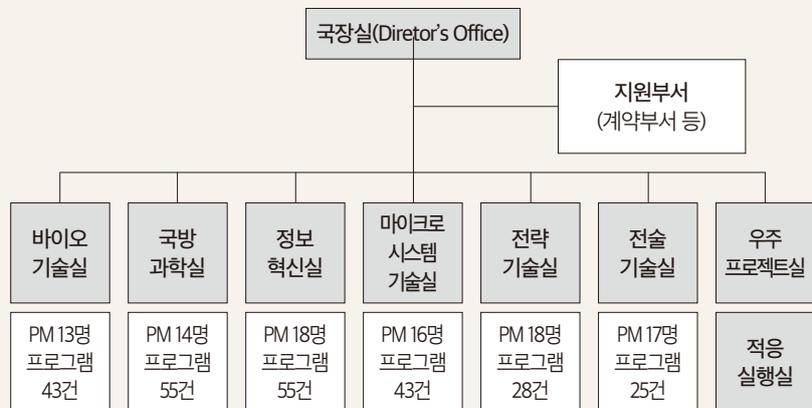
*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대학 및 민간 연구소 ← DARPA → 제품을 출시하는 산업계

○ (조직·예산) 국방부 산하 독립 운영체계를 갖춘 공무원 조직으로, 기획·평가·관리를 주도하는 PM이 조직의 40% 이상 차지(220명 중 96명)

* PM 1명이 평균 2~3개의 소수 프로그램을 담당

- 연간 약 3.8조원 수준을 지원(35억 달러, 국방예산의 약 5.9%)하며, 약 250개의 프로그램 운영 중(프로그램별 3~5년간 총 100~150억원 지원)

<참고 : 美DARPA 조직도>



○ (주요 성과) 자율주행차, 백신 플랫폼 기술(mRNA), 4족 보행로봇, 음성인식(Siri) 등 혁신적 기술 개발에 결정적 역할

⇒ 미국 내 타 부처로의 확산(에너지: ARPA-E 등) 뿐만 아니라 영국·독일 등 선진국들도 美DARPA 체계를 도입·운영 중

❶ (독립적 조직·예산) 외부 영향을 배제, 기관 독립성을 중시하여 국방부 고위층(장관 등)에게 직보하고 내부는 수평적 조직 환경* 형성

* 국장-부서장-PM 3단계 구조로 의사결정 과정 최소화, 부서장은 신규 PM 발탁에 집중

- 매년 30억(약 3조)달러 이상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국방비의 약 5.9%)

❷ (PM 주도) 우수한 인재를 발탁 채용하여, 한시적 임기(4~5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 1순위에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

- 30~40대 젊은 연구자 중 소속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인재를 채용, 새로운 아이디어 유입을 위해 매년 PM의 25% 정도 신규 교체*

* 퇴직자는 역량을 인정받아 대학·연구소·기업·군으로 복귀 혹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창업 연계

- PM은 소수의 프로그램(2~3개)을 담당하면서 프로그램 기획, 연구자 선정, 과제 중단여부 결정 등 운영단계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참고: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PM의 권한>

단계	세부 내용
기획	프로그램 기획 권한, 과제 공고문 작성 총괄
평가	평가위원 구성 가능, 평가의견과 무관하게 연구자 추천 가능
관리	과제 지속 수행 여부(Go/No-go) 판단

❸ (유연한 연구관리) 경쟁형R&D, 경진대회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을 사용하며 목표 변경(Moving Target) 등 허용

- PM의 결정에 따른 승인과정도 위원회 보다 실장, 국장 등 개인단위의 의사결정으로 추진하고 실패를 경험 가치로 인정

<미국내 DARPA형 조직>

구분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HSARPA (Homeland Security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I-ARPA (The 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	ARPA-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Energy)	ARPA-C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Climate)
설립연도	1958년	2002년	2007년	2009년	미정 (바이든 대선공약)
설립목적	파괴적 혁신기술에 전략적 선제 투자로 적국으로부터 기술적 우위 강화	테러· 국가재난 사태 방지 및 효과적인 대처에 필요한 R&D 지원	대테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통합관리 관련 기술 지원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위험 연구지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Net-Zero)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후 관련 연구 지원
예산	약 35억 달러 (21년 기준)	최대 3.7억 달러 추정(18년 기준)	비공개	약 4.27억 달러 (21년 기준)	5억 달러 (예상)
위치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에너지부	미정
조직	미션수행 중심의 6개 기술실, 지원부서 등	국경·해양 보안, 화생방, 사이버 보안, 폭발물 처리, 복원력 시스템 부서	수집, 컴퓨팅, 분석, 예측정보 4개 분야	시니어 리더십, 획득, 예산 및 전략적 지원, 펠로우, 법률 등	미정 (기후 혁신 워킹 그룹을 구성해, ARPA- C의 구체적 운영계획 마련 중)
인력	약 220명(18) (PM 96명)	PM 44명(18)	PM 13명(21)	약 51명(21) (PM 19명)	미정
특징	시대를 앞선 선구자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점진적 발전보다는 혁신적 변화를 추구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단기간 실증개발에 초점	다양한 방식의 토너먼트와 경쟁을 강조	실증개발보다는 에너지 분야 도전적 연구에 초점	ARPA-E에서 수행해 왔던 기술 중 저탄소 에너지 변형분야에 집중

미래기술개발전략사업(첨단연구개발사업) 연구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연구분야 또는 주요성과	(주요성과) mRNA 기술, 자율주행차, 음성인식기술 (Siri), GPS 기술 등	(주요성과) 생화학테러 대응 신속 탐지장치 등	(연구분야) 자연 처리정보 추출, 다국어 처리 연구, 양자정보 과학, 정보보안 등	(연구분야) 고효율 에너지 저장장치, 차세대 바이오매스 변환 등	(연구분야) 탄소 포집, 저장, 제거 기술 개발
--------------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3.

< 주요국 DARPA형 조직 운영 사례 >

- (영국) ARIA*(독립 전문관리기관) * 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
 - 설립 : '22년 예정(최소 10년 간 운영 보장)
 - 예산 : 총 1조원 규모(8억 파운드, 영국 정부 예산총액 중 1% 수준)
 - 주요 특징 : ARIA 설립법 제정(영국 상원 검토 진행 중)을 통해 유연한 연구비 집행 가능, 감사 및 정보요청 등에 대한 독립성 보장

- (독일) SPRIN-D*(독립 전문관리기관) * Bundesagentur für Sprunginnovationen
 - 설립 : '19년(약 10년간 운영 예정)
 - 예산 : 총 1조 3,000억원 규모(총 10억 유로)
 - 주요 특징 : 예산 집행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파괴적·혁신적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역할 수행

- 연구자들이 제안(Bottom-up)한 주제를 심사(약 12주 소요)를 통해 채택, ①자금조달, ②법률 자문, ③회계, ④네트워크 구축 등 포괄적 지원

* 채택율 : 3% 수준(20년 기준 400건의 제안서 중 12개 채택·지원)

- (일본) Moon-shot 프로젝트(전문관리기관 내 별도 조직)
 - 운영 : 5년('19년 ~ '23년)
 - 예산 : 약 1조원 규모(총 1천억엔)
 - 주요 특징 : Moon-Shot 프로젝트 목표와 각 과제별 부처의 역할에 따라 전문기관 내 총괄·독립 권한을 갖는 PD(Program Director)를 운영

< 참고 : 문샷 프로그램 목표 예시 및 담당기관 >

-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신에너지 산업기술개발기구, NEDO)
- 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식량공급(바이오 중심기술연구개발전기관, BRAIN)
- 주요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치료시스템 실현(일본 의학연구개발국, AMED)

< 10대 전략기술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예산	2022 예산	증감	
				%
인공지능	593,786	727,965	134,179	22.6
이차전지	50,976	65,055	14,079	27.6
수소	177,713	245,751	68,038	38.3
5G/6G	177,857	191,246	13,389	7.5

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저

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술 육성법을 제가 제정하고자 제안을 했던 것이고 마침 부처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탔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니

까 위원님들이 그런 점 감안하셔서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V.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5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6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8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12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	13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14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의회법안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건축예술진흥법안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광고산업 진흥법안	
		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공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1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2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3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장애인체육지원법안
			43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46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4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49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중앙행정관할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58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59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60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990호



양 정 숙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무소속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2.20. 제안
상 임 위 원 회	상정
	제안설명
	2022.03.30.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유제한 규정이 마련된 2008년 국내총생산이 1,154조 원, 2020년 국내총생산이 1,924조 원이고,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1년 40개로 늘어나 국내 경제규모 자체가 성장한 점을 보면 현행 민영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자산총액 기준을 특정금액으로 하는 경우 국내경제규모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내총생산에 연동되는 비율을 특정하여 규율함으로써 국내경제 규모에 따라 규제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참고자료**

<SBS 및 지역민방 9개사 주요 주주(5% 이상) 현황>

구분	주요 주주		구분	주요 주주	
	특수관계자	지분		특수관계자	지분
SBS	(주)티와이홀딩스	36.9	JIBS (제주)	(주)한주홀딩스코리아	31
	자사주	3.1		신언식	9
	국민연금공단	10.6		(주)소디프비엠티	23
	VIP자산운용	6.67		(주)미디어월홀딩스	10.5
KBC (광주)	(주)케이비씨지주	35	G1 (강원)	대도종합건설	5
	정서진	5		에스지건설(주)	24.29
	대신증권	8.2		조창진	10.19
	일신방직(주)	7.25		에스지(주)	4.81
	모아건설	6.79		(주)태영건설	7
	(주)서산	6.41		(주)대양	5.31
	삼일건설(주)	5.79		(주)아모르컨벤션웨딩	5.21
	전방(주)	5.25		(주)SYS홀딩스	5.07
TJB (대전)	대신송춘문화재단	5	CJB (청주)	대림산업(자)	5
	(주)우성사료	39.825		대림운수(자)	5
	우성운수(주)	0.167		(자)금강개발	5
	(주)우성유통	0.008		(주)두진	29.6
	(주)대웅	10		(주)두진건설	4.61
	부원공업(주)	7		이두영	2.01
	대전교통(주)	5.77		금성개발(주)	27.8
UBC (울산)	(주)벨아이앤에스	5.6	KNN (부산)	(주)넥센	39.44
	(주)삼라	30		이오상	0.001
	박정국	7.4		(주)성우하이텍	5.6
	(주)이수화학	6		(주)귀뚜라미홀딩스	28.68
JTV (전주)	(주)정원개발	5	TBC (대구)	자사주	5.46
	일진홀딩스(주)	40		(재)귀뚜라미복지재단	4.46
	한일네트워크(주)	14.07		최성환	0.67
	플렉스(주)	7		서도산업(주)	2.85
	에이제이(주)	6		한재권	2.58
	(주)비와이씨	5.5		최장희	0.7

’21. 12월 말 기준.

<현행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구분	1인 지분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지, 뉴스통신
지상파방송사업자	40%	10%	소유 금지	10%
종합편성PP	40%	30%	20%	30%
보도전문PP	40%	30%	10%	30%
위성방송사업자	-	-	49%	49%
SO사업자	-	-	49%	49%
IPTV사업자	-	-	49%	49%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	49%	-
전송망사업자	-	-	49%	-

주요발언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의사일정 제52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기업의 명목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고, 지상파방송에 의한 여론 독과점 우려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후적인 언론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자산 기준을 특정한 자산총액이 아닌 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되나 자산 기준이 자주 변동됨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유사 사례인 ㈜삼라와 ㈜호반건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인한 방송산업의 성장 가능성,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중략)

■ 양정숙 위원



아까 제가 대표발의했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하고 관련

해서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소유제한 기준을 유연화하는 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다액 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대 주주와 관련된 방송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별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제한 기준을 정액이 아닌 비율에 의하도록 하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공정거래법상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도 정액이 아닌 GDP 대비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개정이 되었고, 지금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기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509호



윤영찬

선 거 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1.24.	제안
상임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2022.03.30.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안이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과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음.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는 비용절감, 최적의 마케팅 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최첨단 기술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알고리즘”,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성과를 실용화·사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고위험인공지능을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규율에 관한 기본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위험인공지능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바. 고위험인공지능을 이용한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또는 거부권 등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사. 이용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 해당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0조).

아.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자.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참고자료**

<글로벌 주요국 인공지능 신뢰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유럽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법안」으로 고위험 인공지능 중심 규제(공급자 의무 부과 등) 제안(21.4.)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활용 고지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거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를 제도화(「유럽개인정보보호법」, 18.~) ▶민간 신뢰성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보급(20),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3대요소 제시(19)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 채택(19) ▶주요 기업(IBM, MS, 구글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개발원칙 마련, 공정성 점검도구 개발·공유 등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자율규제 전개 ▶과잉규제 지양과 위험기반 사후규제 기조하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신뢰확보 10대 원칙(투명성, 공정성 등)을 담은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20)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시민 등 3천명이 참여한 숙의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권고사항 도출(18)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윤리규범(18.4.), 공공부문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침(19.6.),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20.5.) 등 수립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7대 기본 원칙을 담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원칙」(18.3.) 발표

자료: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5.14.)

<인공지능 윤리기준 주요내용>

- [최고 가치]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를 ‘인간성(Humanity)’으로 설정
- [3대 기본원칙]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인간성(Humanity)’ 구현을 위한
 - 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10대 핵심요건] 3대 기본원칙의 실천·이행을 위한 ①인권 보장, ②프라이버시 보호, ③다양성 존중, ④차별금지, ⑤공공성, ⑥연대성, ⑦데이터관리, ⑧책임성, ⑨안전성, ⑩투명성 요건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의 비전·목표·추진전략 >

비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 - Trustworthy AI for Everyone -		
목표 (~'25)	책임있는 인공지능 활용 세계 5위	신뢰 있는 사회 세계 10위	안전한 사이버국가 세계 3위
추진 전략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구현 환경 조성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사회 전반 건전한 인공지능 의식 확산
	①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신뢰 확보 체계 마련 ② 민간 신뢰성 확보 지원 ③ 인공지능 신뢰성원천기술개발	① 학습용 데이터 신뢰성 제고 ② 고위험 인공지능 신뢰 확보 ③ 인공지능 영향평가 추진 ④ 신뢰 강화 제도 개선	①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강화 ② 주제별 체크리스트 마련 ③ 인공지능 윤리 정책 플랫폼 운영

자료 : "과기정통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5.14.)

< 인공지능 위험 구분 >

위험 수준	내용
불허용 위험 (Unacceptable Risk)	국민의 안전, 생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자유의지를 따르지 않는 AI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
고위험 (High-Risk)	국민들의 권리,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공공 서비스, 교육 또는 채용, 신용 판단 및 사법 집행 등이 포함됨
제한적 위험 (Limited Risk)	명확한 투명성이 요구되고 조작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챗봇과 같은 시스템 사용 시 사용자가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
최소 위험 (Minimal Risk)	대다수의 AI 시스템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국민들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비디오 게임 또는 스팸 필터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

자료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초안 발표, KIR 리포트 글로벌 이슈, p.13, 2021.6.7.

< 알고리즘의 정의 >

알고리즘이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수행해야 할 과정들을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반드시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일정한 순서를 목적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것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 입력 :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
- (2) 출력 : 적어도 한가지 결과가 생긴다.
- (3) 명백성 : 각 명령들은 명백해야 한다.
- (4) 유한성 : 알고리즘의 명령대로 수행하면 한정된 단계를 처리한 후에 종료된다.
- (5) 효과성 : 모든 명령들은 명백하고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389호



이 원 택

선 거 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1.18.	제안
상 임 위 원 회		상정
		제안설명
	2022.03.30.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현행법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0조).

참고자료

< 현행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수준 비교 >

금지행위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이용 및 제3자제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X	과징금(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해당 금액)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 제공받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자료 1. 이해관계자 의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지나친 형사처벌 만능주의 우려

- 본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기술적·행정적 위법행위가, 개인에 대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인지 의문임
-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IT 행정법률의 지나친 형사처벌 만능주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성을 포섭하기 어렵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며, 경영공백과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근로자 소득과 인력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위치정보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방향의 개정이 적절할 것임

■ (제21조제2항제1호) 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 본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제1호),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호)
- 그러나, 약관은 그 자체로 계약인 바 개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고, 별도의 제한 또는 기준 없이 개별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서비스 이용 요금 포함)을 규정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약관변경을 희망하지 않는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로 보임
-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이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안내(‘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보호에 관한 사항 외에도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요금 등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전체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을 별도의 제한 또는 기준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별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적·악의적 요청사항(이용요금 조정 등)까지 수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서비스 이용자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용약관의 내용을 개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하게 되는 경우, 개개인의 산발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현행법 제12조제2항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또는 타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쉽고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 i) 동의철회권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이용약관에 공개하는 등 정보주체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 ii) 2022년 4월 시행 예정인 위치정보법 개정안 제21조의2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철회 방법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포함하도록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제21조제2항제2호)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항

○ 이미 현행법 제18조에서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2022년 4월 시행 예정인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제21조의2)이 신설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음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문언상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음

○ 무엇보다 본 조항에서 말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며, 만약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현행법과 2022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위치정보법 개정안으로 규율 가능하므로 안 제21조제2항제2호역시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항임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109호



변재일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5선(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1.03.	제안
		상정
상임위원회	2022.03.30.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대다수는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원격수업, 재택근무, 음식배달, 모바일금융거래 등 대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는 통신인프라 위에서 제공되는 만큼 통신인프라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함.

실제로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전국에 걸친 통신장애로 국민들의 불편은 매우 컸으나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 기준의 이용약관 및 법적 미비로 국민들의 불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비대면 시대, 국민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이용약관 신고 시에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 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자동 요금 반환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및 요금반환 계획 및 절차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 33조의3 신설).
- 라. 이용자는 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33조의4 신설).
- 마.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을 금지행위에 포함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 바.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 발생 시 방통위는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면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1. 상정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3. 주요 법률안 소개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주요 법률안 소개
 6. 주요 법률안 소개
 7. 주요 법률안 소개
 8. 주요 법률안 소개
 9. 주요 법률안 소개
 10. 주요 법률안 소개

 **참고자료**

<관련 부처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중단) 등의 행위를 위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로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 중 ‘명백한 중과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문과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는 ‘전기통신서비스 제한’이라는 조문과 서로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으로도 포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또한,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 면제’의 경우, 위약금은 제공된 결합 할인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경영적 관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통신장애에 따른 위약금 수준이 다른 사유로 인한 위약금 이용자 간 차별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민사·형사 제재가 가능한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각 호는 사업자가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의 행위”를 타 금지행위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247호



윤영찬

선 거 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1.03. 제안
상임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2022.03.30.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보장제도는 유선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5G의 상용화 이후 5G 고객을 유치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무선 인터넷 속도는 고객들에게 고지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인터넷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및 안 제104조).

참고자료

<참고>

- 유선인터넷 최저속도 보장제도(SLA : Service Level Agreement)
- (개념)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사전에 맺은 계약
 - 2002. 8. 1.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일반 개인·가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속도(다운로드 전송속도)를 보장하는 SLA 제도 도입
- (현황) SKB·KT·LGU+는 전체 유선인터넷 상품 최대 다운로드 전송속도의 50% 수준*을 최저보장속도로 설정하여 운영 중
- * KT 잇셋 사태 이후 2021. 8~9월 최대속도 2.5Gbps 이상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1Gbps 이하 상품과 동일하게 50%로 상향(기존: 30~40% 수준)

<사업자별 최저보장속도(다운로드 기준)>

구분	최대 100M	최대 500M	최대 1G	최대 2.5G	최대 5G	최대 10G
SLA	50Mbps	250Mbps	500Mbps	1.25Gbps	2.5Gbps	5Gbps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5월 11일 | 2022년 4월 27일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3669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2.02. 제안
상임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개정안과 건설공사관련 법률 비교>

구분	소방시설공사사업법 개정안 (정부안)	소방시설공사사업법 개정안 (백혜련의원안)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전기 공사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사업법
부정청탁 등 금지 규정	○부청청탁에 의한 재물등 취득. 제공 금지	○부청청탁에 의한 재물등 취득. 제공 금지	○부청청탁에 의한 재물등 취득. 제공 금지	○부청청탁에 의한 재물등 취득. 제공 금지	○규정 없음
적용 대상	○소방시설 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	○건설공사업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를 제외)	○문화재 수리업자	
최초 위반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정. 영업정지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 이하 과징금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10억 이하 과징금	○자격취소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등록취소 또는 3년 이하 영업정지	
2차 위반시 (3년이내)	-	○2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억 이하 과징금	○2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20억 이하 과징금	-	
3차 위반시 (3년이내)	-	○등록취소	○등록취소	-	

벌칙	○부청청탁에 의한 재물등 취득. 제공: 1년↓징역, 1천만원↓벌금 ○위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행위: 1년↓징역, 1천만원↓벌금	○부청청탁에 의한 재물등 취득. 제공: 3년↓징역, 3천만원↓벌금 ○위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행위: 1년↓징역, 1천만원↓벌금	○부청청탁에 의한 재물등 취득. 제공: 5년↓징역, 5천만원↓벌금 ○위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행위: 3년↓징역, 3천만원↓벌금	○위의 위반으로 자격. 영업정지 기간에 업무. 영업한 행위: 3년↓징역, 3천만원↓벌금	○규정 없음
----	--	--	--	--	--------

<소방시설업 관련 통계>

□ 소방시설업 현황 (2022. 1. 31. 기준)

(자료: 소방청)

소방 시설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			방염처리업 섬유, 합성, 합판
	계	전문	일반	계	전문	일반	계	전문	일반	
9,987	1,322	243	1,079	7,031	6,622	409	823	386	437	811

□ 소방시설업 종류, 영업범위, 등록기준

시설업	영 업 범 위	정 의	기 술 인 력
설 계 업	전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보조인력 : 1명
	일반	연면적 3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1명 보조인력 : 1명
공 사 업	전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1명 보조인력 : 2명
	일반	연면적 1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1명 보조인력 : 1명
감 리 업	전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기술사 1명 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 각 1명
	일반	연면적 3만㎡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 각 1명
방 처 리 업	방염대상물품을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 방염대상물품 : 커튼류, 카펫, 벽지류, 전사용·무대용 합판(섬유판), 양막, 무대막 등	





V.

본회의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114169호



유 정 주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2.03.3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2.04.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등).

참고자료

[표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납품처별 프로그램 제작 건수 현황

구분	지상파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종합 편성 채널 사용 사업자	IPTV	유료 방송	OTT 등 온라인	기타 독립 제작사	해외 방송 사업자 및 제작사	합계	
										건수
2020년	건수	3,976	2,224	486	560	207	1,101	1,063	115	9,732
	비율 (%)	40.8	22.9	5.0	5.8	2.1	11.3	10.9	1.2	100.0

자료: 『202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표2] 방송영상산업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독립 제작사
업체당 평균 매출액	503	164	5,485	414	1,148	48

*자료: 2020 방송영상 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2021.3.)

주요발언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유정주 의원 발의 문화 산업진흥 기본 법안,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 20호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데 현행 법에서는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방송 영상독립제작사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 사업자 등 이외에도 온라인동영상제공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도 독립제작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만 '온라인동영상제공자'의 용어 신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부처 의견으로 먼저 과기부와 방통위는 부처 합의를 토대로 정부가 OTT를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 규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다른 OTT 법제 정비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OTT 관련 법제 정비 시 사업자 중심이 아닌 역무 중심으로 규정하기로 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서 지금 개정안 나목을 사업자가 아닌 역무 중심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 의견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제20호 단서에 제20호다목 신설 취지에 맞게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또 두 번째로 제 20호나목은 부처 의견을 감안

해서 OTT 사업자가 아닌 역무 중심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 제20호다목은 향후 신규 플랫폼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콘텐츠를 구매해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작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끝으로 개정안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수정의견 안은 14페이지 하단부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5페이지입니다. 온라인동영상제공자가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인데 안 제11조제2항은 온라인 동영상제공자가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방송영상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독립제작사를 지원·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온라인 동영상제공자의 지위나 성격 등과 관련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문체부는 독과점적 사업권 등을 부여받은 방송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제공자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제작사 지원 의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과기부는 온라인동영상제공자와 관련한 국내 산업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이므로 독립제작사 지원 의무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14쪽 제2항 20호 내지 부칙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다음, 15쪽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11조 2항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 소위원장 박정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본인 범위라?

■ 유정주 위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좀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의견은 받아들입니다만 문체 부 검토 의견 보니까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독과점적 사업권 등을 부여받은 방송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제공자는 성격이 달라서 이 독립제작사 지원 의무에 대해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셨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 유정주 위원



그런데 방송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제공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전파나 공공재를 이용해서 독과점적 사업권, 그러니까 공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 뜻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지금 방송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그런 권한이 확보가 되고요. 온라인동영상제공자는 누구나 뛰어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과기부 입장도 좀 있습니다만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 자체가 시장 형성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거대한 동영상 사업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단계에 바로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정주 위원



그런데 영화 역시 공공재는 아닌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요.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 유정주 위원



방송이 아닌 영화는 공공재가 아님에도 지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여기서 지원 의무는, 현재 2항에 나온 것은 독립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건데 그 주체가 방송 사업자가 노력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방송 쪽이건 아니면 영상 쪽이건 다 하고 있습니다.

■ 유정주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방송 영상산업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독립제작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변했고요. 그래서 지원·육성해야 되는 것에 문체부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 봐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아까 앞서 온라인동영상제공자 성격이 달라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과방위와 방통위에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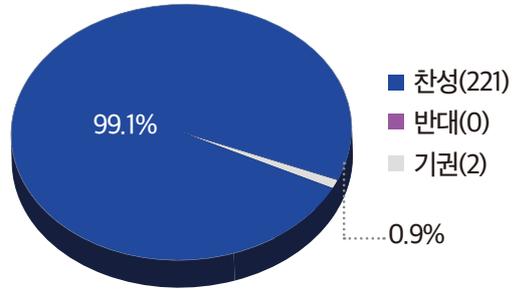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심정희
 의사일정 제1항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부터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자의 범위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비디오 법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OTT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 동영상'이라는 표현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아직 사용된 예가 없고 그 해석에 따라 독립제작사 해당 여부 및 신고의무 등의 규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간 동영상을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정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12.30 / 2022.04.15
- 발의자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 10인
- 표결 의원 : 재석 223인 / 재적 300인
- 표결 결과 : 수정가결 223인(찬성 221인, 반대 0인, 기권 2인)



YES 찬성 (221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 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연 김학용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현 이성만 이수진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제원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숙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의원

기권 (2인)

정경희 조수진 의원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2115079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2.01.0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2.04.0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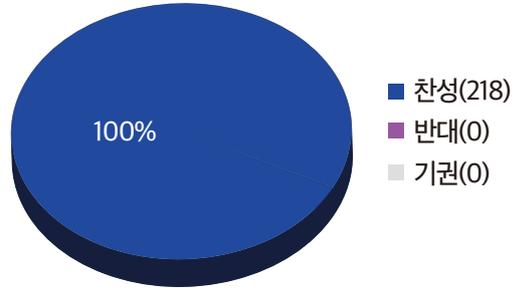
나. 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대안반영폐기 법률안(3건)

- [21109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1인)
- [211106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 [211009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등12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04.04 / 2022.04.05
- 발의자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18인 / 재적 300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18인(찬성 218인, 반대 0인, 기권 0인)



YES 찬성 (218인)

- | | | | | | | | | | |
|-----|--------|-----|-----|-----|-----|------|------|-----|-----|
| 강대식 | 강민국 | 강병원 | 강선우 | 강은미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 구자근 | 권명호 | 권성동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협 | 김교홍 | 김기현 | 김남국 | 김도읍 |
| 김미애 | 김민기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주 |
| 김수홍 | 김승남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 김용판 |
| 김원이 | 김의겸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진표 | 김태년 | 김학용 | 김한정 |
| 김형동 | 김홍걸 | 김희재 | 김희국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류성걸 | 류호정 | 맹성규 |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 박대수 | 박병석 | 박상혁 | 박성준 | 박수영 |
| 박영순 | 박완주 | 박재호 | 박 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배준영 | 배진교 | 변재일 |
| 서동용 | 서범수 | 서병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일준 | 설 훈 | 성일종 | 소병철 |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현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원식 | 신정훈 |
| 신현영 | 안규백 | 안민석 | 안병길 | 양경숙 | 양금희 | 양기대 | 양이원영 | 양정숙 | 양향자 |
| 어기구 | 엄태영 | 오영환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곤 | 유경준 | 유기홍 | 유동수 | 유상범 |
| 유의동 | 유정주 | 윤건영 | 윤관석 | 윤두현 | 윤영덕 | 윤영찬 | 윤재갑 | 윤재욱 | 윤주경 |
| 윤준병 | 윤창현 | 이개호 | 이동주 | 이만희 | 이명수 | 이병훈 | 이상현 | 이성만 | 이소영 |
| 이수진 | 이수진(배) | 이양수 | 이 영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은주 |
| 이정문 |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식 | 이현승 | 이형석 | 인재근 |
| 임병헌 | 임오경 | 임이자 | 임호선 | 장철민 | 장혜영 | 전봉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주혜 |
| 전혜숙 | 정경희 | 정동만 | 정성호 | 정우택 | 정일영 | 정점식 | 정진석 | 정청래 | 정태호 |
| 정필모 | 조경태 | 조명희 | 조오섭 | 조은희 | 조응천 | 조정훈 | 조해진 | 주철현 | 주호영 |
| 지성호 | 진성준 | 천준호 | 최강욱 | 최기상 | 최승재 | 최연숙 | 최인호 | 최재형 | 최종윤 |
| 최춘식 | 최형두 | 최혜영 | 추경호 | 태영호 | 하영제 | 한기호 | 한병도 | 한준호 | 허 영 |
| 허은아 | 허종식 | 홍기원 | 홍석준 | 홍성국 | 홍정민 | 황보승희 | 황운하 | 의원 | |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 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R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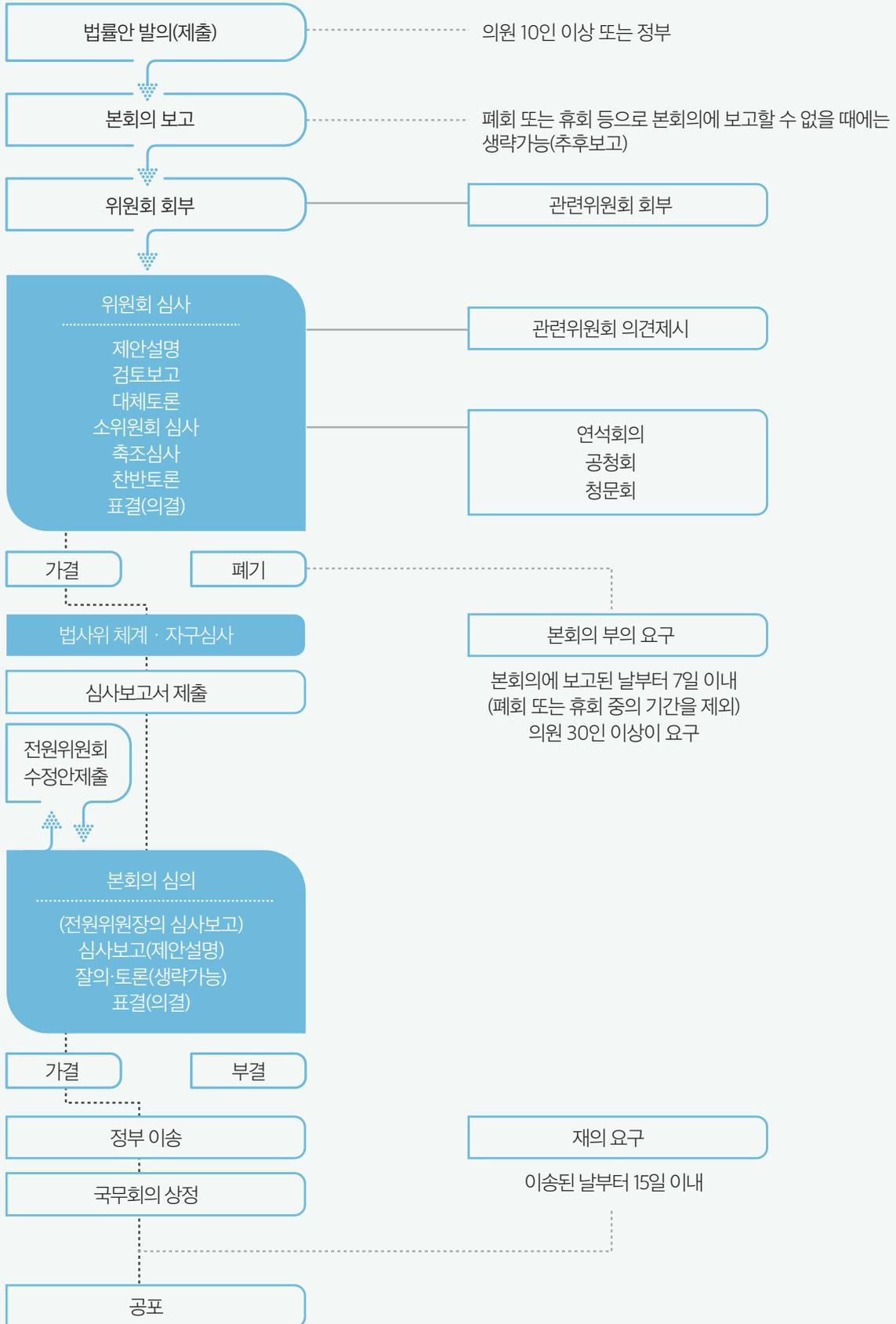
Policy & Business Report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동훈타워7,8,10-16층)

www.draju.com